

[사 건 명] 행심 2018 - 42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7.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담임교사는 2018. 7. 3.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 쪽지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의 학교 생활안전부장은 청구인과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 사실’이라고 함)을 확인하였다.

(1) 청구인은 2018. 3~4월에 거의 매일 ■■■■ 학생과 카톡 대화를 하였

고, 대화중 ■■■■와 다투게 되어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다툼 이후 청구인은 학교에 커터 칼, 맥가이버 칼, 육각렌치를 학교에 가져와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를 죽이겠다(해치겠다).’ 는 말을 한 사실

(2) 청구인은 ○○○○, ●●● 학생을 카톡 대화방에 초대하여 ○○○○, ●●●의 여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

다. 이에 2018. 07. 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함)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부가적 특별교육(학생 및 학부모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학폭위의 조치 결과(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에 따른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본 사건은 2018. 4. 16. 발생하였고 청구인과 3명의 피해학생의 화해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석 달이 지난 뒤 피해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여 알려지게 된 것이지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들이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안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려고 하였으나, 학교측은 출석 대신에 의견서 제출을 권유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은 학교측의 조언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학폭법 제17조 제5항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커터칼은 평소 학교의 준비물이며, 청구인은 평소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수리용으로 육각렌치나 맥가이버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단 한차례만 학교에 가져갔으며 피해학생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커터 칼 등을 미리 준비하여 학교에 가져온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사건의 피해학생 3명에게 커터 칼 등을 직접 보여주면서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커터 칼 등과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라. 피해학생 부모들의 의견서에는 ‘처벌보다는 학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달라’는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자치위원들은 그 진위여부에 대해 자의적 추측을 하였다.

마. 면담과정에서 청구인의 모친은 피해학생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측은 피해학생 부모들이 불편해 할 수도 있다고 접촉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등 보호자간의 화해를 막은 것은 학교였다.

바. 자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심각성 2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정도 4점, 화해정도 3점으로 총 15점이므로 학급교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부가적 판단요소를 심의하면서 청구인의 반성정도가 낮고 학급교체로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선도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조치를 가중해야 한다며 전학처분을 결정한 것은 같은 요소를 중복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트러블이 많다는 이유로 가중처분을 하였으나 그 트러블이라는 내용도 명확치 않아서 단순히 트러블이 많다는 이유로 가중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고 구두로 참석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보호자가 회의 당일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피청구인은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진술로 대체 가능함을 전달해드린 사실이 있을 뿐 의견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들에 대하여 흥기에 해당하는 칼들을 보여주며 위협을 하였고 ‘죽이겠다.’ 라는 협박을 하였으며,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위협을 하여 피해학생들은 두려움을 느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단지 2018. 4월경의 사건에 그치고 이후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없음을 주장하나,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한결같이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과격한 언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는 그에 따른 지속성의 점수를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해학생들이 본 사안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과 두려움을 호소하여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즉각적 대면사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유선상으로 서면사과로 대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담임교사가 피해학생 보호자 면담시 청구인측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학생 보호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마. 자치위원회는 부가적 판단요소인 선도가능성에 대한 협의 결과 학

급교체를 통하여서는 청구인의 선도가능성이 적고, 청구인은 다른 학급 학생들과도 트러블이 많아 전학조치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전학조치를 결정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9살 때(초등학교 2학년 당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이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약 3년간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받아왔으며, 6학년에 진학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학교생활을 해 왔다.

(2) 청구인이 6학년에 진학 한 후 몇 차례 문제를 일으켰으며 본 사건 전에 다른 반 학생에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문제되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개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도 있었다.

(3) 이 사건은 2018. 4.경 발생한 사안으로서 2018. 6.경 담임교사의 쪽지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에 의해 알려지게 되어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조치원인 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다.

(4) 이에 따라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학폭위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석달이 지난 후에 학폭위가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들에 의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 아님에도 학폭위가 개최되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근거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고 함)에서는 학폭위 개최 시기나 학교폭력의 신고 주체, 신고시기 등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려고 하였으나 학교측은 출석 대신에 의견서 제출을 권유하였고 청구인의 모친은 학교측의 조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이는 학폭법 제17조 제5항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관한 판단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조치원인 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학폭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청구인의 학교폭력에 대해 학폭위에서는 조치를 심의 및 의결함에 있어서 학폭법 및 학폭법 시행령상의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기본판단요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 2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반성정도 4점, 화해정도 3점으로 총 15점이므로 학급교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어서 부가적 판단요소를 심의한 결과 학급교체보다 중한 전학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하였다.

다) 당시 학폭위 회의록에 따르면 부가적 판단요소를 심의함에 있어서 학폭위 위원들은 “① 청구인의 반성 정도가 낮고 학급교체의 선도가능성이 적다, ②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도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③ 다른 학급 학생들과도 트러블이 많았다고 알고 있고 다른 학급으로의 교체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 같고 선도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조치를 가중하여 전학조치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④ 평소 학생의 품행이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학급교체보다는 전학이 적절하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결과적으로 전학조치에 동의한다고 하며 청구인에 대해 전학조치 의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학폭법 및 학폭법 시행령상의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기본판단요소별 점수에 의해 학급교체 조치로 학폭위에서 의결한 후 부가적 판단요소를 더하여 학급교체보다 중한 전학조치 의결을 하여 이

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가적 판단요소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서 부당하게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① 부가적판단요소를 심의 및 의결함에 있어서는 조치가 남발되지 않고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기본판단요소와는 달리 부가적판단요소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선도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학교생활지도에 대한 순응 정도, 생활 태도의 변화 정도, 피해학생 및 동료 학생들의 평가, 수업태도의 변화 정도, 학칙 준수 및 교사 지도 순응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② 학폭위 위원들이 부가적요소판단을 위해 심의한 내용 중 반성정도가 낮다거나 흥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의 내용은 선도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판단요소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다른 학급 학생들과 트러블이 많다거나 평소 품행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떠한 이유로 선도가능성이 없다고 언급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③ 비록 청구인이 6학년에 진학하여 다른 학급 학생과의 사이에 학교폭력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이 사건 처분 전에 다른 학급 학생에게 돈을 요구한 행위로서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바 없어서 학급교체의 실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그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청구인측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이후 현재 청구인은 본 건 이후로 수업태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담임교사의 지도에 순응

하고 학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은 현재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6학년에 재학 중이며 곧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전학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그 전학조치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선도 및 교육으로 달성되는 목적보다 현재 청구인의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문제, 졸업 시 까지 남은 기간, 현재 청구인의 반성정도 및 보호자의 보호교양의 지 등에 비추면 학급교체 후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선도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청구인에 대한 선도 및 교육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여지는 점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청구인에 대해 학급교체보다 중한 전학조치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전학조치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학급교체로 변경하며, 나머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